

제 22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 11. 3.)

조례·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목 차

1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	1
2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	4
3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7
4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5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6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7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3
8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9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58
10	거창군 상시고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8
11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74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81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	91
14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 -----	96

〔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0. 23.

나. 발 의 자: 이성복 의원 대표발의

(이성복. 김종두. 표주숙. 이흥희. 강철우. 박희순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정이유

-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4에이치활동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나.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 제5조
 나. 예산 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2017년 예산 136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농업축산과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0. 25. ~ 10. 3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완료(2): 경상남도, 사천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 도양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 및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재,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30백만원을 4에이치회원(학교 4에이치, 영농 4에이치 등)의 과정활동, 사업활동,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4에이치본부(4에이치후원회)의 각종 단체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 (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

제5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2017년 4H 활동지원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편성목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36,200	700	40,700	94,800
4H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영농 4H 교육강사료	1,000	-	-	1,000
	재료비	학교, 영농 4H 재료구입	2,000	-	-	2,000
	일반보상비	경진대회 참석	1,500	-	-	1,500
	일반보상비	도, 중앙교육 참석	1,500	-	-	1,500
	일반보상비	5도5군 4-H 대회참석	1,000	-	-	1,000
	민간이전	4H 연합회 활성화 사업	1,800	-	-	1,800
	민간이전	4-H 야영대회	3,000	-	-	3,000
	사무관리비	4-H농업정보지	6,000	-	1,200	4,800
	일반보상비	4-H 양성 교육 보상	1,400	700	-	700
거창영농 4H 203050 육성	행사운영비	창업농을 위한 팜핑대회	3,000	-	-	3,000
	민간이전	공동과제포 운영	5,000	-	-	5,000
	민간이전	영농과제지원	20,000	-	-	20,000
4H활동 지원	민간이전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 (학교 4-H)	10,000	-	5,000	5,000
	민간이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9,000	-	4,500	4,500
	민간이전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지원	70,000	-	30,000	40,000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10. 23.

나. 발 의 자: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최광열 이흥희 권재경 김향란 표주숙 강철우 변상원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준,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도시건축과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0. 25. ~ 10. 3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제정완료(7): 김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지역주민 교류증대와 활동성 강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라. (생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 ~ 거. (생략)

5.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제6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 라. 위원회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회의개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소집요청 시
 - 의결정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마.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나. 예산 조치: 2018년 예산 63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12. ~ 10. 1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제정완료(6): 거제시,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입법예고(4): 통영시, 의령군, 함천군, 함안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원수당: 630천원(7만원*30명*3회)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 대응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당연직 위원

-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2.5.]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4.2.5.] [제목개정 2015.6.30.]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 사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제설·제빙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현행)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추가) 시설물의 지붕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14.12.30.)
- 다.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라. 제설·제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방법,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마.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비치해야 할 제설·제빙 도구를 명시하고,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8. ~ 10. 18.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 창원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이 포함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얼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다만 제6조의 제설·제빙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은, 비치기간 및 미 비치에 따르는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제설·제빙도구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조례 규제개선과제 50선

I. 문제점(유형: 상위법령 위반)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2014.12.30.공포, 2015.12.31.시행)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재해방지 업무에 차질 발생 우려 및 제설·제빙 의무 범위에 대한 주민 혼란 초래

II. 개선방안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과 같이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및 주민 혼란 해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5.12.31.] [법률 제12942호, 2014.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년 겨울 경주지역에 시간당 50센티미터의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경주 소재의 모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리조트 내 해당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이 행사 전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있음.

현행 법률은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제빙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 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積雪荷重)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7조제1항).

□ 「자연재해대책법」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

0304 적설하중

0304.1 일반사항

(1) 지붕에 작용하는 적설하중의 영향이 0303.2(등분포활하중) 및 0303.7(유사활하중)에 규정된 지붕의 최소 활하중보다 클 때에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적설하중을 적용한다.

(2) 적설하중의 작용이 예상되는 벽면이나 기타 구조물의 표면에 대해서는 적설하중의 영향을 고려한다.

(3) 설계용 지붕적설하중은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지붕적설하중계수, 노출계수, 온도계수, 중요도계수 및 지붕의 형상계수와 기타 재하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그림 0304.2.1.]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물의 용도 등에 따라 재현기간 100년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소요 재현기간에 맞추어 환산한 지상적설하중 값을 사용할 수 있다.

0304.2 지상적설하중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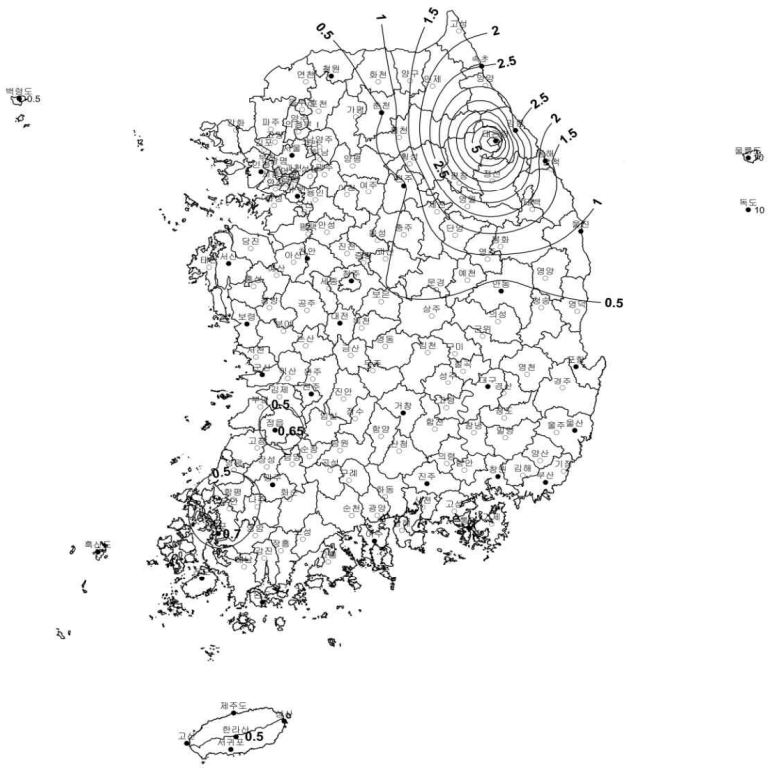
(1) 지붕적설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지상적설하중은 [그림 0304.2.1]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때 [그림 0304.2.1]을 사용할 경우,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0304.2.1] 상의 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1]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

(2) 특정지역에 대한 지상적설하중은 실제의 조사·연구에 의한 수직최심적설깊이 및 눈의 평균 중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0.5 kN/m²로 한다.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구조물에 대한 지역별 100년 재현주기 기본지상적설하중 S_g 은 [그림 0304.2.1.]에 따른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S_g (kN/m²)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 사항에 따라 손해자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고,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여 손해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로손해자 부담금 조항 삭제.(안 제3조)
 - 나.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로 규제 완화. (안 제3조)
 - 다. 원인자부담금 반환사유 및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 ※ 자치법규 일제 정비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도로법」 제91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9. ~ 10. 18.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5):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시
의령·함안·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군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손괴자 부담금)의 도로손괴자부담금이 삭제되고 「도로법」 제91조의 개정사항인 원인자 비용부담 제도 개선으로도 보완이 가능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항	내 용	문 제 점	개선 방안
제1조	조례의 근거를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 규정함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도로법」 제76조이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와, 손케자부담금은 제도가 폐지되었음.	인용 조문 변경
제명	제명이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케자부담금 징수조례」임	「도로법」상 손케자부담금은 부과된 사례가 없고, 원인자부담금 제도에 포섭가능하다는 이유로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로 삭제되었음('06.12.28.공포, '07.3.29.시행). 따라서, 이 조례의 제명에서 손케자부담금을 삭제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 있음	제명 변경

□ 「도로법」

[시행 2007.3.29.] [법률 제8124호, 2006.12.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를 손케(損潰)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케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손케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7조(손케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도로를 손케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케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케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 2008.9.6.] [법률 제9090호, 2008.6.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를 손괴(損壞)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의 13개 시·도 및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손괴자 부담금 실적을 파악한 결과 19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 실적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손괴자 부담금) 군수는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9호, 2017.1.17.,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도로법

[시행 2007.3.29.] [법률 제8124호, 2016.12.28., 일부개정]

제69조(손괴자부담금) 삭제 <2006.12.28.>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 2008.6.5.] [법률 제9090호, 2008.6.5., 일부개정]

제21조(손괴자 부담금) 삭제 <2008.6.5.>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도로점용료 적용기준 개정 내용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 시 점용료 조정산식 완화함.(안 제5조)
 - (현행) 「도로법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
 - (변경)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
- 나. 법령 중복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제6조)
 -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 감면
 - ※근거: 도로법」 제61조제2항·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항·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다.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규정 신설함.(안 제6조)
- 라. 그 밖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용어 순화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조제4조 별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9. 29. ~ 10. 1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평가완료
 - (6) 도내 개정완료(11):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시
고성·산청·함양·합천군
 - (7) 법제처 컨설팅 사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개정사항인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적용기준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하는 내용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도로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9호, 2017.1.17., 일부개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6. 12. 30.>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소재지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지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반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케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17.3.21.]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3.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명 및 제2조·제4조)
 - 제명: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위원회 명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나.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구 조례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호~제3호, 제10조~제13조)
 -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계획, 회계관계공무원
- 기금의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

다.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의 위임취지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위원 구성 정비함.(안 제4조)

-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 신설

마.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상 필요한 사항 신설함.(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바. 위원회·기금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위원회·기금 명칭을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6조,

나. 예산 조치: 2018년 예산 4,600천원

- 기금 운영비: 4,600천원(사무관리비 2,800, 보상금 1,800)

※ 기금 예치금: 276,867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2. ~ 10. 12.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9): 김해·창원·거제·진주·양산시, 남해·고성·
창녕·함안군

※ 개정중(1): 의령군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및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용도, 운용·관리, 결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위원회·기금 명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현수막 게시대 보수,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및 간담회 개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현수막 게시대 보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연 4,600천원의 비용이 필요함.

4. 작 성 자 도시건축과장 장 시 방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

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

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지방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 (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외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법령 중복·재기재사항 삭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3-0288 참조).

□ 법제처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상위법령위반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2조	<p>옥외광고정비기금의재원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p> <p>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6조제4항에따른옥외광고사업수익금중군으로배분되는수익금</p> <p>2. 법제17조에따른수수료</p> <p>3. 법제20조에따른과태료</p> <p>4. 법제20조의2에따른이행강제금</p> <p>5. 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p> <p>6. 국가또는도로부터의보조금</p> <p>7. 그밖에옥외광고물을이용해조성한수익금</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2항에서는 기금은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의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재원의 조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이 없음.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제20조의2에서 제1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p>	<p>"제20조의2"를"제10조의3"으로정비하고,제7호삭제 또는 조 삭제</p>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사항임

3. 주요내용

- 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안 제53조제6항·제58조제3항)
 -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 다만 법 제77조·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초과할 수 없음
- 나.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 (안 별표 7, 별표 8, 별표 10)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경계 완화
- 다.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내 공동주택 면적 비율 규제 완화.(안 별표 7~별표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적용, 조례로 위임 되어 정한 규제강화 부분 삭제함.
- (현행) 70퍼센트 ⇒ (변경) 90퍼센트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별표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7.10.16.)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9. 22. ~ 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별표 11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호 등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제1호다목, 별표 9제1호가목, 별표 제11호라목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생활숙박시설을 50미터 밖으로 건축토록 허용기준을 설정한 근거 및 상업시설내(중심, 일반, 근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을 70→90% 완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행정안전부 위임조례 정비과제(규제완화)

위임 법령 및 조문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정비조문	법령 위임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6110 1 '16110 1	별표 7 ~별표 10	(별표 8 제1호다목, 별표 9 제1호가목, 별표 10 제1호나목, 별표 11 제1호라목)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 등급 등)	'17011 7 '17011 7	제53조제6 항 제58조제3 항	(제65조의2제5항제1호, 제2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1.] [대통령령 제27570호, 2016.1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간생략~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별표 8] <개정 2017. 2. 3.>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 <개정 2016. 11. 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

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16. 11.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1] <개정 2017. 2. 3.>

□ 「주택법」

[시행 2017.11.10.]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 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2.2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2.]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2016.9.12., 일부개정]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본조신설 2014.12.24.]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으로 일부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안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위원수, 위원 자격
 - 수질검사 실시 횟수, 실시 기관 등
- 나.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안 제3조)
- 다.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안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으로 삭제
- 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안 제3조~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수도법」 제29조·제30조,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 나. 예산 조치: 2017년 예산 3,080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9. 22. ~ 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4):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원군
 - (7) 법제처 입법 컨설팅 전부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9조·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기획감사실-11352호(2016.08.23.)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경비
통보」에 근거하여(위원회 참석수당 70천원)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민간위원 11명을 대상, 분기 1회(총 4회) 회의 추진 시 연 3,080천원의
비용이 필요함.

4. 작 성 자 수도사업소장 박 종 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상위법령 위반

조문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 3 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도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도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 '10.11.26.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신설로 위원수 규정함	상위법령에 규정 사항 삭제

□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할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335호, 2016.7.12., 일부개정]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 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 1977.05.12 조례 제 364호

제 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3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제10조 (생략)

※법제처 검토의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도록 함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거창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인력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재 위탁하기 위함.

3. 위탁개요

- 가. 시 설 명: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시장 1길 20
- 다. 사업내용: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
- 라. 위탁대상 사무
 - 조합원간 농작업 구인·구직 알선
 - 조합원간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
 - 관외 인력유치·알선 및 지원사업
 -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
 - 농작업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마.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 운영계약서 체결 및 공증: 2017. 12월
 - 재 수탁기관: 거창군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
 -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 결정

※ 재 위탁 사전 이행사항

- 수탁기관 재 수탁 신청서 제출: 2017. 9. 4
- 재위탁 자체 평가 실시: 2017. 9. 20.
- 재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17. 9. 27(가결)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오랜기간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축적된 경험과, 조합원(농가,농작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 및 적재적소에 인력알선 등이 가능함.
 - 관외인력유치를 위해 진주·부산시 대한노인회와 협약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으로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농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재 위탁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과 농촌인력난의 해소를 위하여 농촌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 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

- ① 인력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마감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6조(지원범위)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있다.
 1.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2. 농작업에 따른 재해보험(농작업근로자공제)으로 국비를 제외한 군비부담금
 3. 농작업 참여자 및 농작업 능력향상 교육시 안전용품 제공 등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재 위탁을 통하여 『거창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위탁개요

- 가. 시 설 명: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 나. 위 치: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다.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계	7ha		
과원시설(체험장)	1.75ha	○사과체험장(1.5ha) ○오미자체험장(0.25ha)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5.25ha	○공원시설(5.25ha) ○부속건물 - 관리동 1동 (207㎡) - 농기계창고 및 저온저장고(61.2㎡)	

라. 위탁대상 사무

- 과원시설 (사과, 오미자과원): 사과나무분양, 꽃나들이축제, 수확행사 등
- 공원시설 : 예취작업, 수목관리 등 공원 내 환경정비
- 관리동 및 농기계창고 등 기타부속시설 유지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없음

(시설사용료를 매년 12월말경 조수입의 14%를 거창군에 납부)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효율적인 과원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거창사과 우수성의 적극적인 홍보와
- 지역의 새로운 관광밸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재 위탁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거창사과 우수성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창사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운영위탁)

-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 사 업 비: 1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8년	100	100	100	-	-	100	-

- 사업내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안정사업 컨설팅 지원

4. 부서 의견

-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및 관련공문 사본 각 1부: 붙임 2
- 경남 시·군별 출연금 현황: 붙임 3
- 경남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붙임 4

6. 검토 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20.6%, 경남도 33.5%, 시·군 2.8%, 금융기관 37.7%, 기업체 등이 5.4%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5년, 2017년 각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참고자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6월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경기재단에 이어 전국 2번째) ○ 2000년 3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04년 9월 진주지점 개점 ○ 2006년 1월 양산지점 개점 ○ 2008년 5월 마산지점 개점 ○ 2009년 7월 거제지점 개점 ○ 2010년 4월 김해지점 개점 ○ 2011년 4월 사천지점 개점 ○ 2011년 5월 중소기업 지원유공단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1년 7월 통영지점 개점 ○ 2011년 11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0만개 달성 ○ 2014년 3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금액 3조원 달성 ○ 2015년 1월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 시행(2본부3부1팀 ⇒ 1본부2부8지점) ○ 2015년 4월 거창지점 개점 ○ 2015년 5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2015년 8월 누적보증공급 4조원 달성 ○ 2016년 5월 창녕지점 개점 ○ 2017년 6월 고객지원센터 개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7.9.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7 명	83 명	4 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이사장 (당연직)	이○○	(주)영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백○○	경상남도기업지원과장
	“	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장
	“	최○○	현대로템(주)생산본부장
	“	김○○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최○○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감사	송○○	공인회계사송정아사무소 대표	
주요기능	- 신용보증, 기본재산관리, 구상권의 행사		

자본금 (단위:백만원)		196,60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94,99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223,553 (자산 총액)
	예산액	8,592	8,768	9,500		부채	26,95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0	0	0		자본	196,60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5,986				18,634		-2,648

[붙임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 조 공 문

인체 : 성기탁 / 경제교통과 (2017-09-25 17:37:12)

단 1원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입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도록 하겠습니다.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신용보증재단 출연 협조 시·군 과장 회의('17.3.15., '17.9.12.)

2.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신용보증) 기반이 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신용보증과 리스크가 높은 특례보증 확대 등으로 향후 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3. 특히, 그간 재단 출연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을 통하여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는 시·군의 출연금 비율이 2.8%에('17.8월기준)불과하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각 시·군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요청하오니 불임의 '시·군별 출연금 산정현황'을 참고하여 2018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1부. 끝.

문서관리카드 경제교통과-79830 1/2

경 상 남 도



수신자 창원시장(경제기업사립과장), 창원시장(예산담당관), 진주시장(지역경제과장), 진주시장(기획예산과장),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통영시장(기획예산담당관), 통영시장(자치과장), 사천시장(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장(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장(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장(지역경제과장), 밀양시장(기획감사담당관), 거제시장(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시장(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장(경제기업과장), 양산시장(기획관), 의령군수(경제교통과장), 의령군수(기획감사실장), 함안군수(경제교통과장), 함안군수(기획감사실장), 창녕군수(경제도시과장), 창녕군수(기획감사실장), 고성군수(경제교통과장), 고성군수(기획감사실장), 남해군수(경제과장), 남해군수(기획감사실장), 하동군수(경제수산과장), 하동군수(기획조정실장),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산청군수(기획감사실장), 함양군수(경제교통과장), 함양군수(기획조정실장),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거창군수(기획감사실장), 합천군수(경제교통과장), 합천군수(기획감사실장)

주무관 하승훈 소삼공인지원담당 김현주 기업지원과장 전결 2017. 9. 12. 백유기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2019 (2017. 9. 12.) 접수 경제교통과-79830 (2017. 9. 13.)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립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383 팩스번호 055-211-3359 / frogcandy@korea.kr / 비공개(5)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서관리카드 경제교통과-79830 2/2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웃는 경남경제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 군정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불임과 같이 거창군의 출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1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부장  본부장 김인수 이사장  이광서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 2017-1275 (2017. 9. 8.) 접수 경제교통과-78647 (2017. 9. 8.)

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 4층) / <http://www.gnsh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25 팩스번호 055-715-5130 / kaiser3@gnshinbo.or.kr / 대국민 공개

[붙임 3] 시·군별 출연 현황

○ 출연금 총액 : 2,039억원

(2017.8.31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출 연 금					기타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 액	2,039	419.8	682.9	56.5	769.1	94.7	16
구성비	100%	20.6%	33.5%	2.8%	37.7%	4.6%	0.8%

○ 시·군별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합 계	1	1	4	5	13	14	18.5	56.5
창원시	1		2	1	2	1	3	10
진주시				2		1	1.5	4.5
통영시		1			1		1	3
사천시					1	1	1	3
김해시					1	2	2	5
밀양시							1	1
거제시			2	2	2	2	2	10
양산시					1	2	2	5
의령군					1			1
함안군					1	1	1	3
창녕군						2		2
고성군						1	1	2
남해군							1	1
하동군							1	1
산청군						1		1
함양군					1			1
거창군					1		1	2
합천군					1			1

※ 미 출연 시군('17년 기준) :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붙임 4]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1996.6월~2017.8월말,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도 출연요청액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평 균 점유율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합 계	30	57,526	100.0%	11,829	100.0%	2,138	100.0%	100.0%
창원시	6	23,650	41.2%	4,148	35.0%	792	37.0%	37.7%
진주시	3	7,070	12.3%	1,483	12.5%	204	9.5%	11.4%
통영시	2	2,046	3.6%	555	4.7%	88	4.1%	4.1%
사천시	1	1,416	2.5%	361	3.1%	66	3.1%	2.9%
김해시	3	9,330	16.2%	1,954	16.5%	434	20.3%	17.7%
밀양시	1	956	1.7%	193	1.6%	40	1.9%	1.7%
거제시	2	3,238	5.6%	938	7.9%	93	4.4%	6.0%
양산시	2	4,823	8.4%	961	8.1%	172	8.1%	8.2%
의령군	1	231	0.4%	50	0.4%	18	0.9%	0.6%
함안군	1	1,180	2.1%	251	2.1%	71	3.3%	2.5%
창녕군	1	503	0.9%	135	1.1%	24	1.1%	1.0%
고성군	1	474	0.8%	130	1.1%	28	1.3%	1.1%
남해군	1	430	0.7%	97	0.8%	13	0.6%	0.7%
산청군	1	332	0.6%	98	0.8%	13	0.6%	0.7%
함양군	1	305	0.5%	97	0.8%	10	0.5%	0.6%
하동군	1	339	0.6%	69	0.6%	16	0.8%	0.7%
합천군	1	257	0.4%	67	0.6%	11	0.5%	0.5%
거창군	1	763	1.3%	226	1.9%	22	1.0%	1.4%
기 타	-	183	0.3%	16	0.1%	23	1.1%	0.5%

* 평균점유율 구간에 따른 출연필요 금액 산출

- 0% ~ 3%미만 : 1억원 , 3%이상 ~ 10%미만 : 2억원 , 10%이상 ~ 20%미만 : 3억원
- 20%이상 ~ 30%미만 : 4억원 , 30%이상 ~ 35%미만 : 5억원, 35%이상 : 6억원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 운영지원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200	180	180	-	-	180	-

- 사업내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3년부터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8년에는 18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 계획하고 있음(17년 이사회에서 센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천만원 줄여 지원토록 검토함)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와 연구 및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0명		5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양○○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신○○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최○○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6. 3. 21 ~ '19. 3. 20			
	감사	이○○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이○○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4 (자산 총액)
	예산액	400	507	488		부채	1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4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07			370		137	

[붙임 2] 관계 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10.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10. 26.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29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290	290	250	10	30	-

○ 사업내용

-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 가공제품 생산기반 시설지원
- 석재자원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표면가공 기술개발

(표면가공복합기법,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등

4. 부서의견

-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원자재 생산기반 시설지원, 석재 표면가공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등의 추진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 활동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금번 사업은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적 석재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각종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경남의 지역 특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석재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하여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15년 178백만원 2016년 309백만원 지원함),

-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업의 전문기술인 고용창출, 매출증대와 더불어 산업 생존력 강화 및 석재가공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 완성 및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4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0명		5명		
임원 (‘17.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양○○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신○○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최○○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6. 3. 21 ~ '19. 3. 20			
	감사	이○○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이○○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고문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64 (자산 총액)
	예산액	400	507	488		부채	1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4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07			370		137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